

2024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리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 (공고·접수기간) '24.10.21.(월) ~'24.11.11.(월)

○ (지원대상)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3.11.~'24.10.)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우선순위 지원) 저탄소제품, 국제탄소규제 대상 제품*, LCI DB 구축 및 작성지침 제작 참여기업(5년 이내), '23년 매출액**이 적은 기업

*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수소 관련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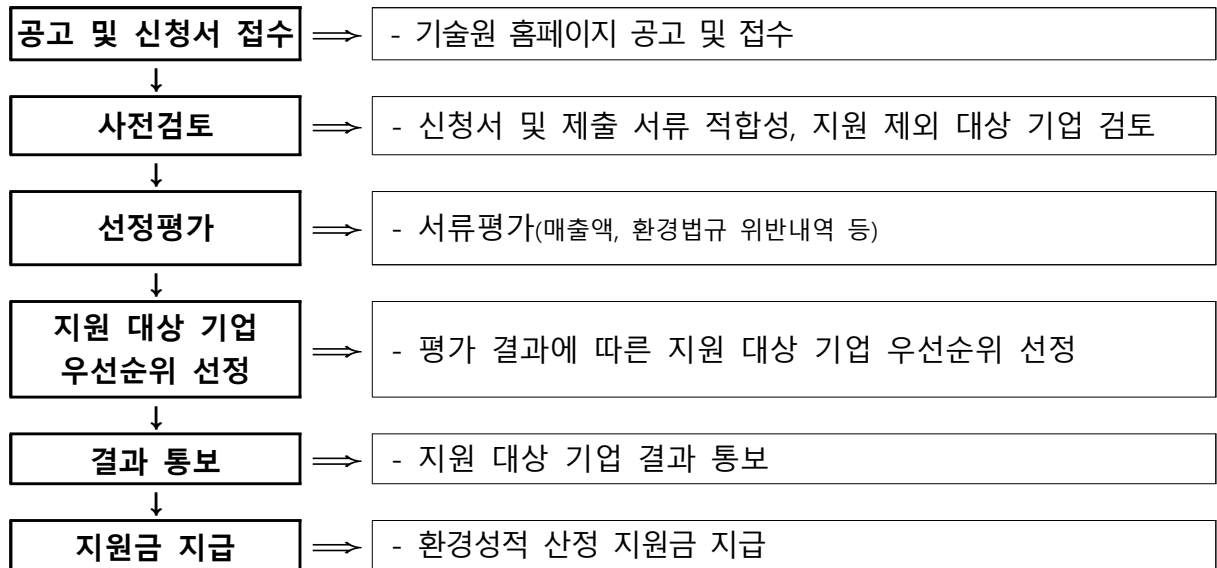
** 매출액은 법인 등록 기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 (후순위 지원) 최근 2년간('22~'23)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기업

○ (지원규모) 총 335백만원

○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 (지원절차).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최대 지원금액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포함)	최초	파생	갱신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 최초, 파생, 갱신 교차 신청 가능(단, 제품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초과 불가)

2

모집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 누리집 내 공고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 제출 완료
(접수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 불가)

인증대상기간	접수기한	지원금 지급
'23.11.~'24.10.	~'24.11.11. 18:00	12월 중

3

신청자격 제한

○ 서류 미비 기업 및 아래의 지원 제외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환경성적산정 컨설팅 비용 및 도안 사용 비용 과대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내역이 있을 경우(법인 등록에 포함된 제조공장 소재지 기준)
- *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관리법(먹는 샘물류에 한함) 등
- ※ 신청기업: 자가점검표 제출 / 기술원: 각 기업 관할 지자체를 통해 위반 이력 확인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및 순번)

제출 순번	구비서류	비고
①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pdf 각각 제출)	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 취득 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로 갈음함 (제출 불필요)
③	(필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④	환경성적 산정(컨설팅) 비용 지출내역 증빙자료 •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타영수자료 ※ (중요)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2
⑥	환경 규제 위반 현황 자가점검표 ※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 위반 세부내역 첨부(공문 등)	서식3
⑦	'23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사업비 청구서 [서식4]	최종 선정기업만 제출 (별도 안내)
⑪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기업명의)	
⑫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5]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h222@keiti.re.kr)

- 접수 기한일자('24.11.11.(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구비서류: 제출 순번에 맞춰 작성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한재현 연구원

Tel) 02-2284-1577 / E-mail) jh222@keiti.re.kr

[서식1]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2023년 매출액 (법인기준)		원	
기업구분	(중소기업)	담당자	성명/직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인증번호	구분 (최초, 파생, 갱신)	인증제 품명	인증제 품분야 (일반소비재, 생산재, 에너지사용 등)	인증취득일	컨설팅 실 소요비용 (세액제외)
1	2024-000	최초	000	생산재	2024-04-03	원
2						원
계						0원

지원사업 기 참여여부	2022~2023년도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여부				
	☐ 없음 ☐ 있음 (참여년도: 년)				

2024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명	
성명	
연락처 (직장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수집항목 : 기업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수집·이용목적 :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보유·이용기간 :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지원사업 종료 후 폐기)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업 지원금 지급 등의 원활한 행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인)

환경규제 위반 현황 여부 자가 점검표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위반 여부를 사전조사하오니 아래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신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인증제품 기준)	관할지자체	행정처분내용	처분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주소 기재)	(지자체명 기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23.00.00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 해당 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내용 관련 증빙 제출(공문 등)				

당사는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신청 관련하여,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4]

사업비 지급 청구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호 관련,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청구금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024. . .

청 구 자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이사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이 어려운 기업의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 나. 참여기업에서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2. 참여기업
 - 가.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의 수령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나. 산정된 환경성적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적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성적표지도안을 활용하여 인증 제품을 홍보한다.

제3조(비밀유지의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일체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1. 참여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선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 없이 참여기업의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된 참여기업의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